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199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5조에 의거 조례제정 위임 근거 규정없이 개인소유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현행조례로 규제함으로써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사문화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사하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폐지

3. 관계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